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126호

##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 및 신체·적성검사 등 시행 공고

2020년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및 신체·적성검사(서류제출 포함)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부산광역시장

### I 체력시험 합격자

가. 합격인원 : 233명 ※ **【붙임 1】** 합격자 명단 참조

나. 분야별 합격자

합격 인원	공개경쟁		경력경쟁									
	소방		구조 (수난)	구급		정보 통신	화재 조사	선박 (항해사)	선박 (기관사)	심리 상담	관련 학과	
	남	여	남	남	여	남	양성	남	남	양성	남	여
<b>233</b>	147	8	12	24	14	2	1	7	2	2	10	4

다. 도핑테스트 결과 : 개별 통보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II 신체검사

가. 대 상 : 233명 ※ 체력시험 합격자 전원

나. 기 간 : 2020. 7. 27.(월) ~ 29.(수) / 3일간

다. 검사병원 : 신체검사 지정병원 18개소 중 1개소 개별 선택

※ 【붙임 2】 지정병원 현황 참조

라.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증명사진, 수수료 등

마. 수 수 료 : 응시자 본인 부담

바. 검사방법 : 지정병원 방문 후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라  
검사 후 인·적성검사 등록시 신체검사서 개별 제출

사.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함.

※ 【붙임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참고

아. 합격발표 : 2020. 8. 14.(금) ※ 임시공휴일(8. 17.) 지정에 따른 일정 변경

### Ⅲ 인·적성검사 및 서류제출

가. 대 상 : 233명 ※ 체력시험 합격자 전원

나. 일 자 : 2020. 8. 4.(화) ~ 8. 5.(수)

일자	등록시간	분야	인원	응시번호	비고
8. 4.(화)	10:00까지	소 방(여)	8	10020095 ~ 10020195	36명
		구 조(수남)	12	34110002 ~ 34110040	
		관련학과(남)	10	30310001 ~ 30310107	
		관련학과(여)	4	30320009 ~ 30320032	
		심 리 상 담	2	31530001 ~ 31530006	
	14:00까지	구 급(남)	24	30210029 ~ 30210164	50명
		구 급(여)	14	30220002 ~ 30220215	
		정 보 통 신	2	30610001 ~ 30610010	
		화 재 조 사	1	31010002	
		선 박(항해사)	7	30810008 ~ 30810024	
선 박(기관사)		2	30910009 ~ 30910012		
8. 5.(수)	10:00까지	소 방(남)	72	10010005 ~ 10010733	72명
	14:00까지		75	10010762 ~ 10011450	75명

- 다. 장 소 :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4층 대강당 ※ **【붙임 4】** 참조  
 라.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 검사비용 : 응시자 부담 없음  
 마. 서류제출 : 인·적성검사 응시자 등록 시 제출  
 ※ **【붙임 5】** 분야별 제출서류 세부 목록 참조

## IV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붙임 6】**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 검사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검사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체온 측정시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문진표를 작성 후 응시여부를 결정하며, 일반 응시자와 이동 동선을 달리하여 **마지막 순번으로 조정 후 별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응시자 등록시 실시하는 **신분 확인**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은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만,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기간 내에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는 응시 불가**)
  - 자가격리자 사전 신청 기간 : 2020. 7. 30.(목) ~ 8. 4.(화) 기간 중 09:00~18:00
  - 위의 사전 신청 기간 종료 후 자가격리가 개시된 경우 즉시 아래의 신청 방법에 따라 사전에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전 신청 방법 : 전화 신청(051-760-3023) 후 개별 안내 예정

※ **사전 신청하지 않거나 안전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응시 불가**

- 적성검사 응시자는 검사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 발현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증상 발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통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
- 응시자는 시행 전일까지 적성검사 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입니다.

## 다. 신체검사

- 신체검사 전일 무리한 운동이나 과로는 가급적 삼가고, 음식섭취 여부에 따라 혈당 등 여러 가지 검사항목에서 허용수치를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검사 전 주의사항을 해당병원에 사전 확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중 색신 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불합격 처리와 아울러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지정병원별 신체검사결과서 발급 소요기간을 사전 확인하여 인·적성검사 당일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 지정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인·적성검사

-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검사 당일 응시분야별 지정된 등록시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 입장은 등록 마감시간 1시간 전(9시, 13시)부터 가능하며, 인·적성 검사는 응시자 등록 및 서류제출이 완료된 후 실시 예정입니다.

## 마. 서류제출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주 40시간에 준함)한 경력을 말하며,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 (예시)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2년 인정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 경우)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서식 별첨) 제출
  - 경력 및 소득 증빙이 곤란한 경우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제출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상별 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경력(재직)증명서 편철 표지(서식 별첨)’를 추가 작성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맨 앞 페이지에 함께 편철 후 제출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복수의 간헐적 기간은 합산하여 1년(365일), 1월(30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구조(수난)분야 등 군경력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 징계사항,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서식 별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응시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기간 내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서류 세부목록(붙임5)’에 따라 ‘제출서류 표지(서식 별첨)’ 작성 후 순서에 맞춰 편철하여 클립으로 고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스테플러 제거)
  - 기타 시험과 관련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1-760-3023)
- ※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붙임】
1.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
  2. 신체검사 지정병원 현황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3-1.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4. 인·적성검사 장소(부산소방학교) 안내
  5.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경력채용분야)
  6.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서류전형 제출서류 세부목록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주의사항 안내문
    - 7-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8. 서류제출 관련 서식(별첨)

□ 소 방(남) : 147명(1/2)

10010005	10010022	10010034	10010037	10010055
10010069	10010070	10010073	10010106	10010144
10010155	10010159	10010189	10010205	10010208
10010259	10010271	10010289	10010290	10010292
10010303	10010315	10010319	10010321	10010328
10010337	10010347	10010357	10010361	10010377
10010380	10010381	10010387	10010388	10010404
10010415	10010417	10010423	10010440	10010457
10010465	10010477	10010481	10010485	10010491
10010498	10010514	10010528	10010530	10010531
10010533	10010540	10010549	10010556	10010569
10010589	10010601	10010604	10010621	10010625
10010636	10010658	10010662	10010670	10010671
10010675	10010687	10010699	10010705	10010713
10010726	10010733	10010762	10010763	10010769
10010776	10010794	10010797	10010801	10010816
10010831	10010834	10010840	10010847	10010850
10010856	10010874	10010876	10010880	10010883
10010902	10010903	10010907	10010910	10010958
10010984	10011002	10011005	10011037	10011040

■ 소 방(남) : 147명(2/2)

10011056	10011059	10011064	10011069	10011085
10011086	10011092	10011093	10011100	10011113
10011119	10011123	10011128	10011132	10011136
10011137	10011141	10011153	10011158	10011162
10011163	10011167	10011174	10011189	10011204
10011210	10011213	10011225	10011230	10011231
10011270	10011297	10011299	10011303	10011312
10011315	10011339	10011343	10011345	10011354
10011355	10011361	10011410	10011423	10011430
10011449	10011450			

■ 소 방(여) : 8명

10020095	10020102	10020119	10020120	10020147
10020175	10020178	10020195		

■ 구 조(수난) : 12명

34110002	34110008	34110013	34110019	34110021
34110024	34110026	34110031	34110035	34110036
34110037	34110040			

■ 구 급(남) : 24명

30210029	30210030	30210031	30210034	30210043
30210049	30210057	30210065	30210074	30210085
30210091	30210105	30210106	30210112	30210114
30210119	30210128	30210131	30210136	30210142
30210153	30210157	30210163	30210164	

■ 구 급(여) : 14명

30220002	30220017	30220025	30220053	30220056
30220061	30220068	30220073	30220080	30220115
30220123	30220166	30220214	30220215	

■ 정보통신 : 2명

30610001      30610010

■ 화재조사 : 1명

31010002

■ 선박(항해사) : 7명

30810008      30810015      30810017      30810018      30810020  
30810023      30810024

■ 선박(기관사) : 2명

30910009      30910012

■ 심리상담 : 2명

31530001      31530006

■ 관련학과(남) : 10명

30310001      30310004      30310011      30310033      30310066  
30310067      30310072      30310081      30310088      30310107

■ 관련학과(여) : 4명

30320009      30320015      30320022      30320032

번호	병원명	전화번호	주소
1	구포성심병원	051-330-3996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 (구포동)
2	대동병원	051-554-1233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87 (명륜동)
3	동래봉생병원	051-520-5546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4	동아대학교병원	051-240-5310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5	부산광역시의료원	051-607-2491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6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891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7	부산성모병원	051-933-767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8	영도병원	051-419-7757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9	광혜병원	051-503-2111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96 (온천동)
10	좋은강안병원	051-610-987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11	부민병원	051-330-307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12	해운대부민병원	051-602-81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13	김원묵기념봉생병원	051-664-400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14	일신기독병원	051-630-0421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좌천동)
15	춘해병원	051-608-027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16	동의의료원	051-850-876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17	부산보훈병원	051-601-6141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18	해동병원	051-410-670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쫘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 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u>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u>
13. 눈	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	------	----	------

검 사 내 용

신장	cm	체중	kg
시력	맨눈 좌: 우: 색신 (색각)	혈압	청력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치아		호흡기질환	
간질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검사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 ] 합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격여부	[ ] 불합격	
	[ ] 판정보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 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무 경력**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 ※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http://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공 통	①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본인 기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기준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소변동이력(전체) 포함 ※ 남자의 경우 하단 병역사항 포함 ④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전체 경력 발급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 별첨) ⑥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소 방	⑦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 령	공 통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홈택스 발행) 1부 ※ 경력기간 전체 - 당해 연도의 경우 급여내역 확인 가능자료(통장사본 등) 제출
	구조(수난)	<군경력 응시자> ⑨ 병적기록표(병무청) 또는 군 경력증명서 중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전 부대 교육입교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자격증+관련분야 경력 응시자> ⑨ 관련분야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⑩ 경력(재직)증명서 1부
	구 급	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1급 자격증 사본 1부 ⑩ 경력(재직)증명서 1부
	정보통신	⑨ 자격증 사본 1부 ⑩ 경력(재직)증명서 1부
	화재조사	<관련학과 응시자> ⑦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제외 <자격증+관련분야 경력 응시자> ⑨ 관련분야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⑩ 경력(재직)증명서 1부
	선박(항해사)	⑨ 관련분야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선박(기관사)	⑩ 승무경력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심리상담	⑨ 경력(재직)증명서 1부
관련학과	⑦ 2년제 이상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 4년제 대학교 미졸업자 : 재학(휴학 등)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제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시험당일 응시자 등록시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성검사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확진환자는 인적성검사 응시가 불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별도장소 응시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별도시험장



#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 [올바른 기침예절]

